

인권정보자료실  
CPk1.41.2

김근태씨 고문사건 신문스크랩 (2)

인권정보자료실  
CPk1.41.2

김근태 (2)



# CROCKY BOOK

남광사 미술용모조  
NAMS TOWNS CO.



# 「拷問」은 가혹하고 「斷罪」는 미적미적

## 金槿泰씨 고문警官 4명 事件 5년 넘게 宣告안돼

### 特檢 구형한지도 半年 넘어

### 李根安씨와 관련... 해 넘길 판

전민정령의장 金槿泰씨를 고문한 전치안본부 대공수사 단 정황판 4명의 대한 1심선 고공판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 사법부의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拷問)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

전민정령의장 金槿泰씨를 고문한 전치안본부 대공수사 단 정황판 4명(金槿泰, 李根安, 朴正浩, 朴正浩)은 1986년 10월 1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선 고공판이 있었으나 사법부가 고공판이 늦어지고 있어 사법부의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拷問)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

전민정령의장 金槿泰씨를 고문한 전치안본부 대공수사 단 정황판 4명(金槿泰, 李根安, 朴正浩, 朴正浩)은 1986년 10월 1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선 고공판이 있었으나 사법부가 고공판이 늦어지고 있어 사법부의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拷問)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

전민정령의장 金槿泰씨를 고문한 전치안본부 대공수사 단 정황판 4명(金槿泰, 李根安, 朴正浩, 朴正浩)은 1986년 10월 1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선 고공판이 있었으나 사법부가 고공판이 늦어지고 있어 사법부의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拷問)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

전민정령의장 金槿泰씨를 고문한 전치안본부 대공수사 단 정황판 4명(金槿泰, 李根安, 朴正浩, 朴正浩)은 1986년 10월 1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선 고공판이 있었으나 사법부가 고공판이 늦어지고 있어 사법부의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拷問)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

전민정령의장 金槿泰씨를 고문한 전치안본부 대공수사 단 정황판 4명(金槿泰, 李根安, 朴正浩, 朴正浩)은 1986년 10월 1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선 고공판이 있었으나 사법부가 고공판이 늦어지고 있어 사법부의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拷問)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

다. 한편 金槿泰가 지난 86년 10월 1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선 고공판이 있었으나 사법부가 고공판이 늦어지고 있어 사법부의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拷問)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







# 김근태씨 고문사건

90.11.9 동아

**28일 結審공판**  
 金權泰씨 고문경찰관  
 前受審의장 金權泰씨 고문사건과 관련, 기소된 前治安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金秀顯(56) 등 경찰관 4명에 대한 17차 공판이 7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근태씨 고문경찰관 공판 변호인쪽 증인 2명 신문**  
 1990.11.9  
 김근태씨 고문사건과 관련,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김수현(56) 경감 등 경찰관 4명에 대한 17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서울형사지법 중법정에서 열려 변호인쪽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과 공소유지 담당검사의 신청에 따라 오는 28일 18차 공판에서 김근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고문현장 검증기로 김근태씨 18차 공판**  
 1990.11.29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는 28일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를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김수현씨 등 4명에 대한 18차 공판을 열고 피해자 김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벌였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0일 오후 3시 김씨가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조사실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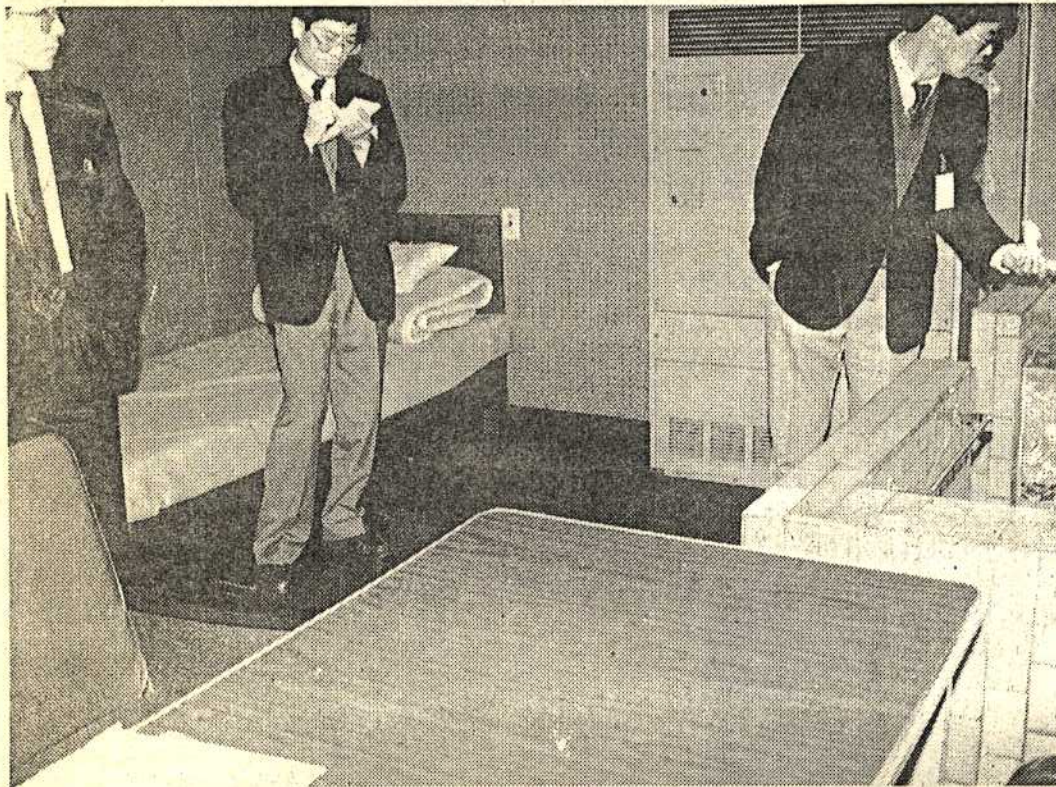






# 법원,拷問현장 첫조사

## 南營洞분실 訊問室 검증 金權泰씨 사건



### 최초 입수 "고문의 현장"

진으로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방음장치가 된 신문실의 오른쪽에 세면대가 달린 욕조, 왼쪽에 이동가능한 1인용 나무침대, 중앙에 고정된 의자 2개와 책상들이 놓여있다. 침대 머리맡에는 부서진 호출용 비상벨이 보인다.

金權泰씨가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는 치안본부 南營洞 대공분실의 5층15호 신문실을 담당재판부와 변호인들이 현장검증하고 있다. 이 신문실이

「고문현장」에 대한 법원 사실에까지 확대되고 고문업무 인정률도 높아지고 있다. 의 조사가 지금까지 법원의 실체구명부 인정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재판부의 진인정부를 놓고 고문현장의 진위판에 화를 치부받은 뒤, 치안본부 조

# 물고문등 입증가능성 커 "司法활동등 진보" 긍정평가

### 「가혹」사건 보안대조사실도 검증

부원전치안본부 대공조사단 소속 경찰관 金秀顯(40)인(2)등 4명의 담당재판부 인사를 조사지법(2부)재판장 俞成俊(47)은 세계 인권선언인 10일 하오 1시

이날 현장검증하는 담당재판부와 金權泰씨를 담당하는 龍山區 蔡月洞 치안본부 대공조사단(수장 南營洞)의 신문실 현장검증에

김씨가 고문을 당했다는 서울 龍山區 蔡月洞 치안본부 대공조사단(수장 南營洞)의 신문실 현장검증에 참가했다.

이날 현장검증하는 담당재판부와 金權泰씨를 담당하는 龍山區 蔡月洞 치안본부 대공조사단(수장 南營洞)의 신문실 현장검증에 참가했다.

지정변호사(특별검사),姜 赫善(변호사) 그리고 金權泰씨인 金權泰씨(변호사)의 친척 40여분과 3층의 VIP를 들을 문실과 3층의 VIP를 들을 조사했다.

김씨가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5층15호신문실은 방음장치가 된 4평7각의 방에 1인용침대와 욕조, 히터 2대, 고정된 책상과 나무보는 의자 2개가 있었으며 문 입구에 전기문철트 1수대의 철대연명의 호출용 비상벨이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

다들 물어봐서 그런 것 같아... 방음장치가 돼있어... 문철트... 문실에서 나느라... 들리지 않다고 설명했으나... 심할 것

과 비명소리를 내며... 생생히 전달돼 당시 金씨와 같은 시기에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던 文龍植(31) 등이 金씨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을 한 것이다. 또 방의 크기나 욕조 위치 등으로 미루어 당시 金씨가 머물렀던 1층70호방과 비에 길이 1m70cm가량 되는 고문대(물침대)에 묶여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군사기밀 고문당사자 후원회를 한 해에 1천에서 2천여명의 후원자를 모집하고 법원 소송을 지원한 부대 대위 李成晚(40)의 변호인인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鄭相鶴)부장관(2)는 지난 4일 경기金浦郡의 해남안부대 조사실 등 현장검증하고 10월 24일(46)로부터 당시 현장에 대한 진술을 하는 사건이 10월 24일 법원 재판이

### 미국 통신대학

학사/석사/박사 안내

- 모든 학사입부 및 교육과정은 미국 본교에서 직접한정함.
- 통신교육으로 미국의 권위있는 대학교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본인은 저렴한 학비로 입학에서 졸업까지 책임지도하고 미국본교 조기부입학.
- 방학기간중 본교교수진과 함께 어학연수 실시계획중임.
- 석사, 박사과정 중시하는 학위논문 및 사회경력사항 중요시함.
- 전문대학 졸업자 및 대학중퇴자는 본대학에 편입하여 조기졸업가능함.
- 미국대학과 본유학원간에 정식Agent가 체결되어 있음.
- 미국대학의 입학은 본유학원만이 입학입부를 할 수 있으며 대부분 학과가 개설되어 있음.

\* 상담시구미서류: 최종학교추임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LA명문대학 정규유학생모집

토비유학원 (02) 563-5666-8 (2층 201호)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44·전민련 집행위원장)씨가 지난 85년 9월 당시 민주위사건과 관련, 구속돼 20일간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갖은 고문을 당했다는 서울 용산구 갈월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속칭 남영동분실)에 대한 현장검증은 공교롭게도 세계인권선언 42돌 기념일인 10일에 실시됐다.

이 때문인지 지난 87년 1월 박종철씨가 고문으로 숨져나간 뒤 실시된 현장검증 때 2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기자를 출입시킨 것 외에는 한번도 공개한 일이 없는 5층 조사실에 이해적으로 기자들의 출입이 허용

됐다. 김씨를 조사했던 경찰관들이 재판에 회부된 지 2년여 만에 실시된 이날 검증에서 재판부와 특별검사 등 검증관계자들은 김씨가 조사받았던 515호 조사실에 들어서자 욕조, 샤워기, 전기코드 등 방 구석구석을 사진찍고 시설물들 사이의 거

대를 놓고 김씨를 묶어 물고문했을 것으로 추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뒤 5년3개월 만에 실시된 이날 검증에서는 몇가지 추론의 단서만을 얻을 뿐 구체적 고문의 흔적을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재판부가 검증을 통해 어느 정도의 심증을 얻었는지는 알

### 남영동 분실의 육조

리를 재 가며 방의 평면도를 작성했다. 검증관계자들은 또 다른 조 사실에서 소리를 지르게 한 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당시 다른 조사실에서 김씨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한 증인의 말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육조와 침대 사이의 거리를 채보면서 그곳에 고문

수 없다. 그러나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대공분실 밖에서 항의시위를 하던 한 전민련 간부는 "5공시절 대표적인 인권침해사례인 이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된다면 이 건물이 언제 또다시 인권유린의 표상으로 등장할지 모를 일"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임범 기자〉

### 김근태씨 7년 구형 다음공판 출정거부

서울지검 공안2부 문성 1990. 12. 13. 은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

소한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43)씨에게 원심에서와 같이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나의 구속은 유신시대 이후 안기부의 일관된 음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적극적 방어권 행사를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최후진술을 거부하며 다음 공판부터는 출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증

1도









‘고문기술자’ ‘고문마술사’ 등으로 불리는 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53) 경감이 오는 24일로 수배된 지 만 2년째가 되고 있으나 달아난 직후 검거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법석을 떨었던 검찰과 경찰의 미온적 수사로 해를 또 넘기게 됐다.

5공비리 차원에서 수사하겠다는 대검의 5공비리 특별수사본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던 검찰은 지난 2년동안 아무런 실적을 거두지 못한 채 여론이 잠잠해지자 최근 슬며시 추적 검거반을 해체했는가 하면 수사본부가 설치된 경기도경은 수사형사 2명으로 걸치려고 수

사본부를 운영, 수사중단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교묘히 피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4백여장에 이르는 경기도경의 수사보고서를 훑어 보면 이 경감과 접촉했거나 전화통화를 한 연고자는 단 1명도 발견할 수 없으며, 수사보고서 대부분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돼 ‘안잡는 것 아니냐’는 향간의

### 이근안 수배령 2년

1990. 12. 18

의구심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 간부들조차 “이 경감은 정권의 희생자일 뿐이라는 동정론이 경찰 내부에 잠재해 있어 검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자수에 의존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일선 경찰들은 “특진이 걸려 있는 강력범이나 시국관

련 사범 검거에 신경을 쏟”이라며 “옛 동료인 이 경감을 붙잡아 내부적으로 눈총받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등 검거를 회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히 묻어나고 있다.

5공 인권유린 상황을 옹변해 주고 있는 ‘이근안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검거책임을 맡은 6공은 지난날의 5공비리 처벌 의지를 의심받지 않을 수 없으며 ‘범죄와 의 전쟁’ 또한 그 빛이 바랄 것은 뻔한 이치이다.

이 경감이 제발로 걸어들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평소 검찰과 경찰에 대해 품었던 한가닥 신뢰감마저 배신감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수원=배경록 기자>

# 김근태씨 고문경관 내달30일 선고

1990. 12. 27

## 재판시작 2년여만에 4명에 징역 10~5년 구형

김근태(44)씨 고문경관 4명에 대한 독직 폭행 등 혐의사건 선고공판이 법원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지 2년1개월 만인 내년 1월30일 이루어지게 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는 26일 피고인측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구형과 변론·최후진술 절차를 끝으로 심리를 모두 마쳤다.

이날 공소유지담당 지정변호사(특별검사)인 김창국 변호사는 형법상의 독직 폭행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불법체포·감금)죄를 적용,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김수현(57) 경감에게 징역 10년, 백남은(55) 경정과 김영두(52) 경위에게 징역7년, 최상남(43) 경위에게 징역5년씩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지난 88년 12월 서울고법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고문경관 4명을 재판에 넘긴 뒤 지난 4월18일 구형절차까지 마쳤으나 재판부가 두번이나 바뀌면서 변론이 재개돼 이날 지난번과 같은 형량이 구형된 것이다. 김 변호사는 논고를 통해 “피

고인들이 단순한 자기방어적 차원을 넘어 전략적 차원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나서는 태도를 보이는 데 가중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고문한 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

의 인권의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사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피고인들에게 엄한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측 변호인인 김병남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이 사건의 경우 김근태씨의 진술 이외

에 다른 확실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재판부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金權泰씨

# 金權泰씨 고문 警官 4명 実刑

## 서울지법 징역 5~2년... 法廷구속은 안해

85년 민주위(民推委) 사건을 수사하면서 金權泰씨를 고문한 혐의로 법원의 재정결정 의 해재판에 넘겨진 전직 안부부 대령 주사단 소속 경찰관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부)재판장 金秀顯(57) 전 대령 주사(商南고교인) (43)·(37)·(36)·(35)에게 징역 2년 6개월, 2년 6개월, 2년 6개월,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85년 9월 사건의 발생하자 5년 4개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지 2년 1개월만의 일로, 고문에 대한 물증이 없어도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權泰씨가 숨겨진 후의 여자가 지정형과 당시 고문판결을 받은 변종자 등의 지출, 현직 중점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대령 주사부에서 사명감을 갖고 임했고, 수사의 치중 한 나머지 재정결정 일이라든가, 대상자가 어떤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어떤 고장한 명분과 중대한 동기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고문행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새삼스레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합의(2부)재판장 金秀顯(57)은 당시 대령 주사단 소속 金權泰씨를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의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85년 9월 사건의 발생하자 5년 4개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지 2년 1개월만의 일로, 고문에 대한 물증이 없어도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權泰씨가 숨겨진 후의 여자가 지정형과 당시 고문판결을 받은 변종자 등의 지출, 현직 중점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대령 주사부에서 사명감을 갖고 임했고, 수사의 치중 한 나머지 재정결정 일이라든가, 대상자가 어떤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어떤 고장한 명분과 중대한 동기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고문행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새삼스레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85년 민주위(民推委) 사건을 수사하면서 金權泰씨를 고문한 혐의로 법원의 재정결정 의 해재판에 넘겨진 전직 안부부 대령 주사단 소속 경찰관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부)재판장 金秀顯(57) 전 대령 주사(商南고교인) (43)·(37)·(36)·(35)에게 징역 2년 6개월, 2년 6개월, 2년 6개월,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85년 9월 사건의 발생하자 5년 4개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지 2년 1개월만의 일로, 고문에 대한 물증이 없어도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權泰씨가 숨겨진 후의 여자가 지정형과 당시 고문판결을 받은 변종자 등의 지출, 현직 중점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대령 주사부에서 사명감을 갖고 임했고, 수사의 치중 한 나머지 재정결정 일이라든가, 대상자가 어떤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어떤 고장한 명분과 중대한 동기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고문행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새삼스레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 김근태씨 2년 선고 항소심 출석거부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11일 전민련 결성선언문을 작성한 혐의로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 자격정지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43)씨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1년을 선고했다. 1991. 1. 11 이날 선고는 김씨가 지국관련자들의 대량 구속 등에 항의, 지난해 12월말에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이어 2번째로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졌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부)재판장 金秀顯(57)은 당시 대령 주사단 소속 金權泰씨를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의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85년 9월 사건의 발생하자 5년 4개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지 2년 1개월만의 일로, 고문에 대한 물증이 없어도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權泰씨가 숨겨진 후의 여자가 지정형과 당시 고문판결을 받은 변종자 등의 지출, 현직 중점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대령 주사부에서 사명감을 갖고 임했고, 수사의 치중 한 나머지 재정결정 일이라든가, 대상자가 어떤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어떤 고장한 명분과 중대한 동기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고문행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새삼스레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 拷問범죄 단호한 척결의지

金權泰씨 고문경찰 유죄판결 의미

5공인권탄압사건의 '마지막 유산'이 되고 있다. 金權泰씨(泰) 고문사건(88년 9월 발발) 관련 경찰관 4명에게 징역 5년~징역 2년까지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런 판결은 6공을어서도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은 당장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던 때다. 민선에서 이루어진 범죄의 기록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던

## 90년력행포 최근대적수사 경종

고문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고문을 당했다는 증거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재판부는 2년 1개월을 19차례의 공판문을 거쳐 재판이 관공인의 진술을 중한 '金權泰' 서울경찰청 대대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4명 중 3명은 징역 5년, 1명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런 판결은 이들과 함께 6공시절 고문 2년 1개월을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전' 고문장관 '李根安'의 검찰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부부 대항수사단 소속 경찰관 4명에게 실형의 선고를 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2부(재판장 윤재부장판사)는 30일 서울지방법원 1부에서 열린 1991년 1월 30일 선고 판결(91도1000호)에 대해 상고했다.

이 사건은 당장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던 때다. 민선에서 이루어진 범죄의 기록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던

이런 판결은 이들과 함께 6공시절 고문 2년 1개월을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전' 고문장관 '李根安'의 검찰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회부했으며, 金權泰씨가 특별명사를 맡았다. 金씨는 전민권 검사사건으로 90년기 소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판례기사 20면>





# 고문근절 人權신장

民

前인정법원장 金權泰씨 고문근절합판 4명의 대한 실행선고  
금고문근절과 인권신장을 위한  
회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  
된다.

특히 법원의 고문과 관련된 죄  
점점 중대가 되는 가운데서도 관  
권정합판의 진술을 배척하고 국  
가보안법원판 피의자였던 金씨의  
진술을 보다 신중히 평가할 수 있  
게 되었다. 법원에서 이 위  
지는 수사기관의 조직적인 고문  
행위의 철폐를 가한 것의 의미인  
다.

## 金權泰씨 관련 경관 4명 實刑의 미

다.  
또 지난달 공판리에 의해 저질  
러진 고문사건의 피해자나 그 가  
족들에 의해 죄상이 폭로되었지  
만 그때마다 「만무니 없는 날」  
「공판리의 판정부정 일화」이라

# “密室수사 철폐” 민권의 승리

## “증거없다” 무혐의 결정 뒤엎고 유죄판결 용단

말 한마디로 고문자들의 음부의  
처벌을 받지 않을 채 흐지부지했  
던 전례의 비취를 이번 유죄선  
고 판결의 전향적인 시사함보  
여 재판부의 기고한다.

자백이었다고 공소사실을 전면부  
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법원  
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유죄판결이 내려졌  
었다.

단정인장을 명백히 했다.  
이 사건은 金씨가 85년 9월 4  
일 三民醫院을 배우종중했다가 이  
유로 국가보안법원판 피의자로 수  
된 후 86년 12월의 결정 조사과정  
에서 11차례에 걸쳐 불고문된 전  
고문근절합판 4명, 고문근절합판  
비롯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부러 판정결합  
판들과 金씨가 고문사실관계  
를 충실하게 대립 고문합판  
가 결정적 증거였음이 상반되긴  
술만이 계속되어 판정결합의 판  
정진술 또한 소로 정합판 재판부  
가 유죄판결의 상당한 이유를  
을 견고했다.

이 일련의 연속 주장의 이행이 판  
사문상회의에서 사건유무부죄의  
대한 재판부의 최종판단의 관습  
이 입증되었다. <朴正泰기자>

국가보안법원판사건도 재심을 청  
구할 수 있게 된다.  
당시 金씨에 대한 보안법원판  
재판은 아무런 물증조차 없던 관  
련자들의 진술만이 증거로 제출  
됐고 金씨가 고문으로 인한 허위

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범죄행위  
라고 지적 「아무리 부정한 범죄자  
라 할지라도 또 어떤 고상한 목적  
이나 중대한 국가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고문행위는 이 사회의  
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라고 고문

형사지법의 고문근절사건 진정장을  
냈으나 기각당했고 86년 1월 朴  
培根 당시 차안법원장 및 고문근  
절합판 13명을 고문합판의로 정  
합의 고문행위에도 불구하고 정  
합의 1년여 동안 수사를 미뤄오  
다 87년 1월 「증거가 없다」며 무  
혐의결정을 내렸다.

이 2월 시을 고문법의 재정신청을 냈  
고 1년 10개월만인 88년 12월 뒤  
늦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고  
문정판 4명의 대한 재판이 시작  
된 것이다.

장점 중 검찰총장과 정에서의 정  
합판들을 중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가혹행위가 인정된다」며 「따라서  
인간존엄과 가치 존중의 관념을 법  
정신의 전면배치된 고문행위를  
가한 피고인들에 대해 그 책임을 엄  
격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문근절합판의 법  
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범죄행위  
라고 지적 「아무리 부정한 범죄자  
라 할지라도 또 어떤 고상한 목적  
이나 중대한 국가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고문행위는 이 사회의  
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라고 고문

판정결합판들이 그 동안의 무관  
과정에 「불고문정기 고문근절  
문합판 때 재판정도 있었으며 합  
다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진술을  
저 허부인했다」며 「그러므로 판  
사문상회의 결정이 부합하지 않음  
시, 金씨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  
고 판정했다.



# 김근태씨 고문경관 실형

4명<sup>500</sup>에 5~2년 선고...법정구속은 안해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45)씨 고문사건과 관련, 독직 폭행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관 4명 모두에게 고문사실을 인정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해설 14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는 30일 김수현(58·당시 경감), 백남은(56·경정), 김영두(53·경위), 최상남(44·경위)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형법상의 독직 폭행죄를 적용하여 김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백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 6월~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근태씨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검찰로 송치된 직후의 정황과 김근태씨 및 김상철 변호사 등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측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수사과정에서 고문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시되고 부정되는 사회안정과 국가안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수사업무에 집착한 나머지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로써 김근태씨 고문사건은 발생 뒤 6년4개월 만에, 피고인들이 재판에 회부된 지 2년2개월 만에 1심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날 법정에는 김근태씨의 부인 인재근씨와 신창균 전민련 공동의장, 민가협 회원들과 피고인들의 가족 및 동료 경찰관 등 2

백50여명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선고가 끝난 뒤 인씨는 "피해자인 남편이 옥에 갇혀 있는데 가해자인 피고인들이 최고징역 5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기도 법정구속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수현씨 등은 지난 85년 9월4일부터 26일까지 23일간 김근태씨를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수사하면서 김씨를 고문대(속칭 칠성판)에 묶어 놓고 물고문 2차례 전기고문 10차례 등 여러번에 걸쳐 각종 고문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가 무

혐의 처리된 뒤 지난 88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된 뒤 징역10년~5년씩을 구형받았다.

피고인들 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수현=징역5년 자격정지5년 △백남은=징역3년6월 △김영두=2년6월 △최상남=2년

독자의견



# 밀실수사-고문 관행에 제동

## 김근태씨 고문경관 유죄선고 의미

5공사절의 대표적 인권침해사건의 하나로 국내외로부터 시선이 집중돼온 김근태씨 고문사건이 30일 사건발생 6년4개월만에 관련 피고인 4명에게 모두 유죄선고가 내려짐으로써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도 “상처만 나지 않으면 아무리 밖에 나가 고문당했다고 외쳐도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공언하면서 고문을 가한(김근태씨 진술)

피고인측 증인으로 나와 동료 경찰관들은 김씨가 수사받을 당시 피고인들 가운데 일부가 대북첩보활동을 맡고 있었으며 전기고문 기술자로 고문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되어 있는 이근안 경감도 사건 당시 경기도경에서 치안본부로 출장간 일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김씨가 송치된 뒤의 정황과 발뒤꿈치의 상처 등을 확인했다는 김

라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부정되는 사회안정과 국가안보는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것”임을 명백히 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조치라 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지탄과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구속이 관행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로 김씨가 고문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

## ‘인권 무시한 안보 무의미’ 결론 법정구속 안해 따가운 눈총받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밀실수사의 고문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주고 있다.

20여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고문은커녕 김씨의 뺨 한번 때린 적도 없다”며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부인해 왔으며 최후진술에서는 “친형제처럼 김씨를 대했는데 이렇게 모략하다니 ‘좌익분자’들의 흑색 선전에 치가 떨린다”며 김씨를 역공격하기까지 했다.

상철 변호사, 김익수 당시 서울 구치소 의무과장 등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측 증인 10명의 증언을 기초로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은 고문을 반드시 처벌돼야 할 범죄행위이며 관련자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적극적 자세로 판결에 임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헌법의 최고이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범죄행위”

상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또 수배중인 이근안 경감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사건 당시 경기도경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고문이 자행된 시간을 계산해 볼 때 반드시 알리바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고문가담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이씨가 검거돼 기소될 경우 유죄판결이 날 것이 확실시된다.

(임범 기자)

이번 사건의 판단이 작게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명예와 구성원들의 사기, 더 나아가서는 국가 공권력 자체의 권위와 도덕성에까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재판부는 오랜 심리과정에서 수많은 고뇌를 했다.

사건 당사자인 김씨와 다른 당사자인 피고인들 사이에 진

술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사건 발생장소가 제3자의 접근이 통제된 곳이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사실인정은 양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관은 인간에 의한 재판제도 자체에 내재하는 본질적 제약을 절감하

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논리와 경험 도출에 따라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김씨가 송치된 직후의 정황과 김씨 및 다른 공소유지 담당변호사측 증인들의

이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며 고문행위는 이런 헌법이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범죄행위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시되고 부정되는 사회안정과 국가안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사건이 개인적 이해관계나 감정에서가 아닌 공무수행

과정에서 수사업무에 집착한 나머지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들이 모두 평생 그늘진 대공 수사분야에서 국가안보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 김근태씨 고문사건 판결 요지

진술, 현장검증 결과 등을 종합해 수사과정에서 공소장의 내용과같은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게 됐다.

이처럼 유죄가 인정된 이상 피고인들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은 자극히 당연한 것이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



金權泰씨 고문경관 "有罪"

金權泰씨를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4명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은

「苛酷행위근절」 司法的 단죄

「密室고문」 피해자 증언 채택 判例 재발방지 경각효과... 上級審 관심



◇金權泰씨 고문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관 白南殿한 씨. 이들이 법정을 나오자 동료인듯한 사람들은 사진기자 등을 막고 방해했다.

「밀실」에서의 이루어진 가혹행위와 피해자측 진술의 신빙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89년 6월의 첫 공판이래 19차례의 공판을 거치면서 이 사건 재판의 추경은 피해

81년 9월의 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 4개월, 관련 경찰관들이 88년 12월 재판에 회부된 때로부터 2년 1개월만의 1심을 마쳤다.

그러나 「이민」 고상한 명분과 불합리한 국가보안법 위헌사도고문행위 등 범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나왔지만, 이번 재판의 판결에서 이루어진 가혹행위와 대안사법정당권을 내린 것으로 보아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앞으로 2심과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급심판결이 어떻게 될지 요전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민」 고상한 명분과 불합리한 국가보안법 위헌사도고문행위 등 범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나왔지만, 이번 재판의 판결에서 이루어진 가혹행위와 대안사법정당권을 내린 것으로 보아 할 것이다.

〈金權泰기자〉











**안양·홍성 교도소장 고소**  
**김근태씨 면회 불허 이유**

전민련 결성선언문 작성 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홍성교도소에 수감중인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44)씨와 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46)씨는 7일 김씨가 수감됐던 안양교도소와 홍성교도소쪽이 김씨를 비롯한 시국관련 재소자와 재야 인사들의 접견을 이유 없이 불허하고 있다며 조찬극 안양교도소장, 이영화 홍성교도소장 등 교도소간부 6명을 형법상 타인의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소했다. 김씨 등은 또 지난 5일 홍성교도소가 김씨를 접견하려는 장씨에게 접견을 금지한 것과 관련,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접견 거부처분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과 접견거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고법에 내고 헌법재판소에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근태씨 보석 신청**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결성선언문 작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돼 2심에서 징역2년·자격정지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44)씨가 9일 대법원에 보석 허가신청을 냈다.

김씨는 장철선 변호사를 통해 낸 보석신청서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됐다든 기소 단계에서 전민련의 활동방향을 규정한 문건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를 추가한 것은 자의적인 법률 적용이자 정치적 보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신의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밝혔다.

**김근태씨 보석촉구 서한**  
**케네디센터, 노대통령에**

미국 뉴욕에 있는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는 지난 18일 노태우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전민련 '결성선언문' 작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등) 혐의로 홍성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44)씨의 보석을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1991. 3. 20**

케네디 센터는 이 서신에서 "김씨를 고문한 경찰관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 김씨는 옥고를 치르고 있다"며 "김씨의 투옥은 정치활동을 제약하려는 한국정부의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李根安 잇었나

은신 2년 7개월 : 公訴시호 13개월밖에 안남아

## 안잡히면 拷問 사실 영원히 묻혀

## 斷罪는 말뿐 : 搜查 사실상 손떼

전민청년부장 金權泰씨 (45)를 고문한 혐의로 지난 88년 12월 24일부터 수배를 받고 있는 李根安전경감 (53) 전경기도경 공안부실장은 1일 현재 9백43일째 도망중이다. 또한 공소시호가 불과 1년 7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李씨 검거를 위한 수사활동은 5공시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李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년 7개월이내에 李씨를 검거해 법정의 세우지 못할 경우 李씨에 대한 단죄는 물론 5공시실의 고문상사의 대한 규명도 영영히 이루어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李전경감의 공소시호만 92년 9월 4일, 92년 10월 4일, 전민청년부장 金權泰씨

를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는 李전경감이 최초로 金씨를 고문한 날짜가 85년 9월 5일이고 공소시호가 92년 7월 4일 때문이다.

金씨 고문사건의 특별검사가인 金昌國변호사는 李전경감에게 적용된 특별법 제4조(특별 체포장단위의 가중처벌)는 위박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공소시호는 7년에서 92년 9월 4일 자정을 넘기 게 되면 李전경감의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李전경감은 金씨 고문의 에도 △79년 남민청사건 △81년 전도련사건 △85년 12월 남부부 金成鶴씨 간첩 조작사건 △86년 반제동맹 사건 등과 관련된 피의자를 장악한 수법으로 고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대부분 공소시호가 이미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해 이들 사건에 대해서 는 진상규명 및 처벌이 어렵 실정이다.

한편 李전경감의 공소시호가 이처럼 만료돼 가는데도 당국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는커녕 전혀 수사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李전경감의 도망을 방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5공비밀경찰 차원에서 李전경감에 대한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특별수사부 해체에 따라 서울지검을 수 1부에서 수사를 맡고 있지만 이미 수사에 손을 놓은 지 오래다.

영고지동행과와 수중의 머물러 있는 경찰수사 1년전에 바뀐 영고지동행에 계속 특이점있을, 계속 수사중이라고만 보고 할 정도로 형사적이다.

이와 달리 지난 88년 12월 24일 검찰의 수사개시 발표와 함께 잠정한 李전경감의 행적은 아직까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서울 大門口龍頭(중)에 살고 있는 자살투과근이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취하고 있지 않느냐 추측이나 들리고 있지만 가족과 연락을 취한 흔적은 쉽게 보이지 않고 있다.

수사관계자들은 李전경

감의 인구가 밀집돼 있는 면서도 인구이동이 빈번한 京畿道城南, 安養 등 수도 권위선도시의 아파트에는 심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

또 도피자라면 밋은 신적화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변의인근의 집을 무릅쓰고 李전경감을 찾고 있는 주변 인물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수사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李根安 누가돕나

이범④ 전제환맥 여 수계전 권제 수계전

이범③ 수계전 권제 권제 권제 권제

이범② 권제 권제 권제 권제 권제

이범① 권제 권제 권제 권제 권제



지난 88년12월24일 이후 2인로 9백44일째 잡적증인「전기고문기술자」李根安 전경감(53·전경기도경공안분실장)은 앞으로 공소시효 만료일인 92년 9월 4일까지 남아있는 3백98일 동안 계속 추적을 피할수 있을 것인가.

「도망자」란 언젠가는 붙잡힐지 모른다는 마음의 동요로 은신장소를 자주 바꾸게 되고 그 과정에서 추적의 단서가 포착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추적경감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지난 한달동안 추적경감을 추적하면서 기자는 묘한 심리현상을 경험하게 됐다. 마치 쫓기는 자가 쫓는자보다 심적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같은 생각이 들었다.

쫓기는 자는 추적해 붙들면 해보라는식의 여유를 부리고 있고 쫓는자는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한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초조함을 느껴야만 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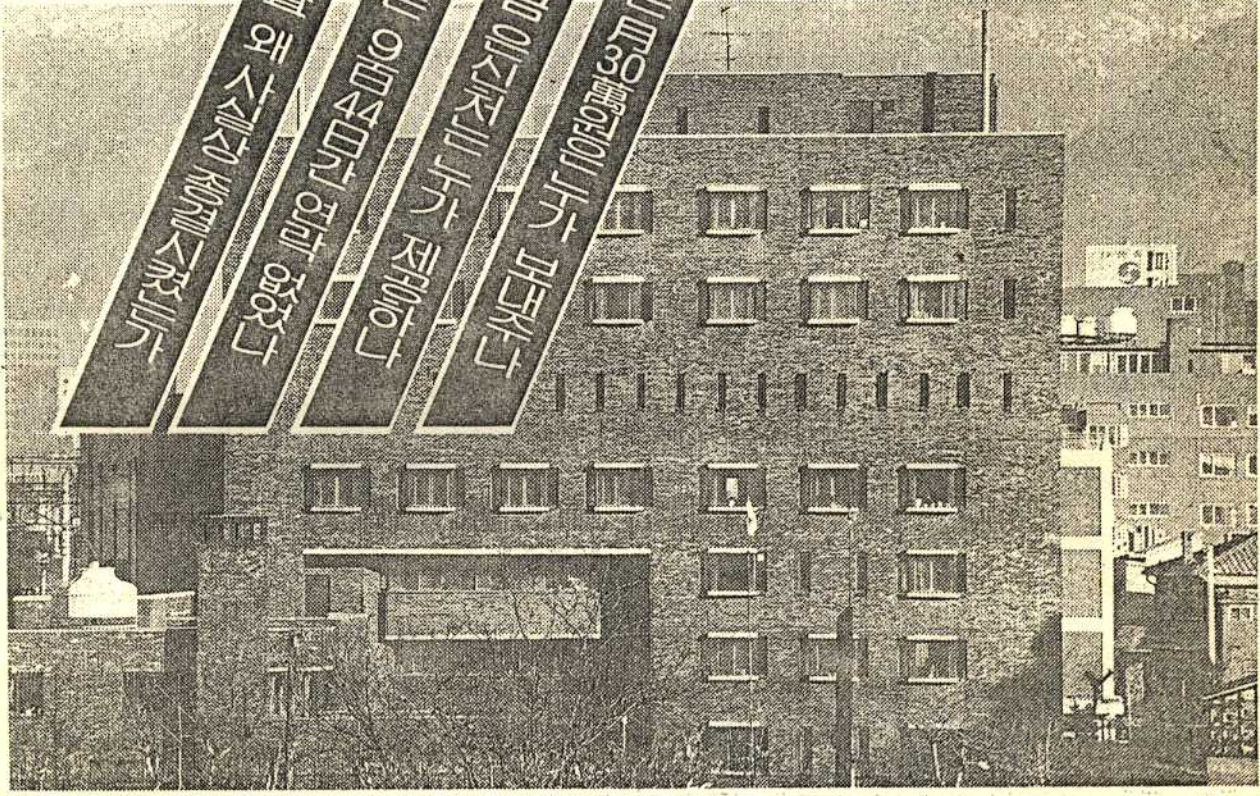
이같은 느낌은 '추적경감이 누군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매우 안전한 은신처를 확보했으리라는 생각이 확신에 가까워짐에 따라 더욱 강해졌다.

지난달 22일 매우 결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제보를받았다.

京畿道 儀旺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 추적경감이 은신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였다.

그 근거로△龍頭2洞에 있는 추적경감집과 그 아파트간에 빈번한 전화접촉이 이뤄지고 있는점△儀旺시에 있는 아파트의 전화가입자 李모씨의 주민등록이 龍頭洞 추적경감집으로 돼있는 점△李모씨의 나이가 추적경감과 같은 38년생이라는 점을 들었다.

실제 龍頭2洞 李전경감



金權泰씨등 시국사건관련자들에게 무자비한 고문수사가 행해진 것으로 알려진 과거의 서울南營洞 치안본부대공문실 전경.

## 記者추적 한달... 아무런 흔적 못찾아 “안전한 은신처 확보” 심증 더 굳어져

집에는 李모씨라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추적경감이 가공인물을 내세워 위장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구나 儀旺시는 추적경감이 오랫동안 근무했던 水原과 거주지인 서울간의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지리상 익숙할테고 서울근교의 인구가동이 빈번해 이웃 주민들간의 접촉이 적은 아파트

에 추적경감이 은신해 있으리라는 추측과도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1주일동안 儀旺市の 아파트앞에서 잠복 취재, 출입자를 확인했지만 추적경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 李모씨란 사람도 가공인물이 아닌 여섯식구를 거느린 실제인물로 드러났다.

같은달31일밤 9시경 직접

집을 방문해 최종확인한 결과 빈번한 전화접촉은 추적경감의 차남과 李모씨의 차녀 간의 연애전화로 밝혀졌으며 주민등록상의 문제도 해명이 가능했다.

해프닝으로 끝난 이 취재 일화는 그만큼 추적경감의 행방에 대한 취재가 쉽지 않음을 잘 말해준다.

기본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때문에 행방에 대

한 초보적 단서도 확보할수 없다.

경찰이 치안본부 강력부에 동향보고를 올린 연고지는 추적경감의 사촌 여동생 李모씨(49)의 경우처럼 1년전 주소지거나 처 조카 申모씨(32·여)처럼 주소가 아예 다른 경우도 있을 정도로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았다.

이쯤되면 범인 은닉까지는 안돼도 도피방조정도의 비난은 피할수 없을것 같다.

18면으로 계속



17면에서 계속

현상금 2백만원을 걸고  
李전경감을 찾고있는 「민가  
협」이나 수사당국에 李전경  
감소재에 대해 그럴듯한 제  
보한건도 들어오지 않고 있  
는 점을 감안할때 李전경감  
을 추적하는 유일한 단서는  
李전경감이 가족과 연락을  
취할 것으로 가정, 그 과정  
을 쫓는 방법밖에 없다.

우편 인편 전화등 3가지  
연락수단을 놓고 집중추적  
했으나 가족과 연락한 흔적  
을 찾을 수 없었다.

88년 당시 수원지검 공안  
담당검사로 李전경감과 몇  
차례의 접촉경험이 있는 차  
泰圭검사(현서울북부지청근  
무)의 말처럼 「성격이 독해」  
가족과 연락안할 가능성도  
있음을 알았다.

이같은 가능성에 대해 대  
공경찰의 「대부」격이었던 차  
處源지안감이나 李전경감과  
같은 대공분실에서 근무했  
던 동료들은 모두 동의를  
표했다.

20년경력의 대공수사관이  
섬뜩리 자신에 대한 추적의  
손길이 미칠 수 있는 행동  
을 하지않으리라는 것이다.

李전경감의 부인 申모씨  
(52)는 「지난88년12월 피신  
한다는 말조차 없이 집을  
나간뒤 일체 연락이 없어  
애만 태우고 있다」고 말했  
다.

또 李 전경감의 여동생  
(49)은 「오죽하면 점점이  
에게 찾아가 오빠의 소재를  
물어보지조차 했겠느냐」며  
서 「점점이로부터 살아있  
다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이밖에도 淸州에 사는 부  
인 申씨의 언니(59)는 「연락  
조차 없어 동생이 울화병에  
걸려 병원에 몇차례 입원하  
기조차했다」고 말했고 경기  
도경의 어느 대공분실직원  
은 「한달에 한두차례씩 李  
전경감부인으로부터 「혹시남  
편에게서 전화연락 오지않  
았느냐」는 내용의 울음섞인  
전화를 받는다」면서 곤혹스  
런 표정을 지었다.

만약 가족과도 연락이 되  
지 않는다면 李전경감은 무  
슨 수로 도피자금을 구하고  
은신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일까.

李전경감이 지난 89년 3  
월 우편으로 청구했던 퇴직  
금 3천5백28만8천3백40  
원은 본인이 나타나지 않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보  
관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또 피부병을 자주 앓았고  
속병을 앓아 약을 상복했다  
는 李전경감이 의료보험을  
이용해 병원에 출입한 사실  
도 없음이 의료보험관리공단  
과 의료보험연합회에서 확  
인됐다.

한편 부인申씨는 「대공경  
찰관들의 의리가 대단해 권  
찮다고 만류해도 지금까지  
도 매달30만원씩 은라인으  
로 돈을 송금해오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경 대공분  
실에서는 부인申씨가 송금  
하지 말도록 만류해 돈을  
거둬 보낸지 오래됐다고 밝  
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서  
송금하는 것일까.

만약 申씨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면 이 돈을 송금하는

사람과 李전경감에게 도피  
자금을 대주는 사람은 무관  
치 않으리라는 추측이 가능  
하다.

李전경감의 도피로 가장  
큰 불행은 겪는 당사자는  
다름아닌 李전경감의 가족  
들.

부인 申씨가 화병으로 몇  
차례 병원에 입원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큰아들(32)과  
둘째아들(29)은 모두 직장

관할동대문경찰서소속 경  
찰들도 동향파악을 위해 申  
씨가 경영하는 미장원에 들  
렀다가 「이 빨갱이 ×들어  
여기는 빛하러와」하는 불호  
령만 申씨로부터 듣고 물러  
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  
었다고 한다.

잠적한지 2년7개월여가  
지나면서 李전경감에 대한  
평가는 申씨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예외로 치더라도 점  
차 바뀌어가고 있는것같다.  
「李전경감이 애국자임은 분  
명하다. 단지 일하는 과정에  
서 지나친 행동이 있었을뿐  
이며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  
적 측면이 더 많았다. 앞으  
로 상황이 바뀌면 현재 일  
방적으로 매도되고 있는 李  
전경감에 대한 평가도 달라  
질 것이다」

대공경찰관들은 이같은 말  
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으며  
경찰내부에서도 李전경감에  
대한 동정적 여론이 조성되  
고 있다.

李전경감이 장기간 도피  
생활을 계속할수 있었던 것  
도 어느 누군가로부터의 지  
원과 함께 이러한 동정적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  
여진다.

그러나 과연 李전경감이  
이러한 세력들의 도움으로  
「여론제관」을 받지 않기 위  
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  
에 나타난다해도 과연 역사  
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인가.

李전경감과 함께 金權泰  
씨를 고문해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위반(불법체포,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金秀顯  
경감(58) 등 전치안본부대공  
수사단소속 경찰관 4명은  
지난1월30일 형사지법합의  
22부에서 징역5년에서 2  
년까지를 각각 선고받았고  
현재 고법에 계류중이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金  
씨에 대해 「뺨 한차례도 때  
린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모두 유  
죄가 선고됐다.

李전경감의 경우 경기도  
경 공안분실에 근무하면서  
南營洞분실로 「출장」나와 「전  
기고문」을 비롯한 「관결밖  
기」등 수많은 고문을 자  
행한 주범으로 수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잡힐경우 이  
들보다 훨씬 무거운 법의 심  
판을 피하기 어려울것이다.

그러나 李전경감이 형벌  
이 무서워 끝내 공소시효만  
료기간전에 나타나지 않는  
다면 李전경감은 자신의 과  
거를 청산할 기회도 갖지못  
하고 정상적인 가정으로 되  
돌아가지도 못할것이 분명  
하다.

비록 육살이는 피할 수  
있지만 평생 쫓겨다니는 생  
활을 되풀이할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李전경감이 쉽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자  
수하리라고는 보이지않는다.

고문피해자 金權泰씨 말  
처럼 그는 고문이라는 인권  
억압행위가 구조적 차원에  
서 이뤄졌던 5共정권의 말  
단 하수인에 불과했음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법정에서 입을 열기  
를 원치않는 사람들이 그의  
도피를 돕고 있다는 추정도  
이같은 근거에서 비롯된다.

<洪銀澤·尹永燦기자>

# 공소時效만 지나라 시간벌기作戰인듯 警察 초보적 단서도없어 도피방조인상

에서 따가운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뒀다.

이들 가족들이 주로 다니  
는 龍頭2洞 S양복점주인  
은 「하루는 申씨가 둘째아  
들 양복을 줄여달라면서 「둘  
째아들이 담고생을 많이 해  
체중이 반으로 줄었다」고  
하는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중3년생인 셋째아들은 학  
교에서도 고문경찰관의 지식  
이라고 소문이 나 성격이 점  
점 비뚤어지고 공부를 안해  
申씨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  
고 있다.

그러나 부인申씨는 이같은  
불행에 대해 「빨갱이가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애  
국자가족이 겪어야 할 피치  
못할 고통」이라며 스스로를  
달랬다.



# 고문경관 11개월후면 처벌못해

**李根安**

1991. 10. 29



李根安 전경관

전민靑聯의장 金權泰 씨(45)등 시국·공안사건관련자들을 고문한 혐의로 수배중인 李根安전경관(53·전경기도경 공안분실장)이 수배된지 1천일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하다.

**도피 3년째...공소시효 만료임박 수사당국, 형식적 수사만 되풀이**

이 사건은 공소시효를 불과 11개월가량 남겨두고 있다.

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보지 않고도 전근직인 수사의지가 없을 경우 5년 이상의 고문기을 자포양양진추전경관의 대한 진정(1991. 9월 15일)에 불응하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을 5년 미차원에서 수사하겠다고 5년 미차원 수사본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을 5년 미차원에서 수사하겠다고 5년 미차원 수사본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을 5년 미차원에서 수사하겠다고 5년 미차원 수사본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를 불과 11개월가량 남겨두고 있다. 이 사건을 5년 미차원에서 수사하겠다고 5년 미차원 수사본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을 5년 미차원에서 수사하겠다고 5년 미차원 수사본부에 배당했다.

【洪福표 기자】

**김근태씨 고문경관 항소심**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45·구속중)씨 고문사건으로 독직복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5~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수현(58)씨 등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관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심선고 뒤 9개월여 만인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인정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고문피해자인 김근태씨와 윤재호 당시 대공수사단 2과장, 서울구치소 송선홍 교도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12월6일 오전 10시.

1991. 11. 09







# 추적 '91사건' (5)

##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1991. 12. 11.

500

이근안(53·경감) 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44)씨, 반체동맹당 사건의 박충렬(30)씨 등 굵직한 시국사건 피의자들에게 전기고문, 관절뽑기 등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으면서도 반달곰이라는 별명으로만 알려졌던 얼굴없는 고문기술자. 88년 12월21일 <한겨레신문>의 보도로 얼굴이 드러나자 곧바로 잠적해 3년 가까이 도피행각을 계속하고 있는 그는 어디에 있는가.

'5공비리 척결'을 외치며 검거에 나섰던 검찰·경찰은 공소시효를 불과 10개월 앞둔 현재까



'못잡느냐 안잡느냐'는 빗발치는 비난 속에 3년째 '완벽하게' 도피하고 있는 고문기술자 이근안씨.

이라는 가성이나.

이런 가정은 이씨가 89년 3월 우편으로 청구했던 퇴직금 3천5백여만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그대로 남아 있어 도피자금이 없는 점 △특별한 제3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수배자는 수시로 거처를 옮기기 마련인데도 1m72~73의 키에 90kg이 넘는 특이체격인 데다 언론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그를 보았다는 사람이 한명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3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 국내에서 목격자 하나없는 완벽한 도피생활이 가능할까라는 의문과 함께 이씨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89년 2월초 이씨가 여수를 통해 일본으로 밀항을 기도하려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검찰이 여수항 일대에서 수선을 피운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내부에 "지난해 6월 삼천포에서 일본으로 밀항했다"는 소문이

# "안잡는다"의혹속 3년간 '감감'

## 수사 보고서엔 매번 "특이사항 없음" 10개월내 못찾으면 형사처벌 불가능

지 이씨의 행적과 관련한 아무런 단서도 찾아내지 못해 도피를 사실상 비호·방조한다는 강한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씨에 대한 검·경의 수사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지난 10월 김충조 의원(민주)의 요청으로 경찰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48명의 수사요원을 동원해 이씨 부인과 여동생(49), 조카가 살고 있는 서울을 비롯 부산, 청주 등 17개 연고지에서 수사를 펴고 있으며 수사비로 지난 8월까지 1천8백여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들 수사관들이 매주 한차례씩 작성하는 수사보고서는 '특이사항 없음-계속 수사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보고서에 나타난 연고자의 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마저 있다.

이와 관련 남영동 대공분실에

서 이씨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한 경찰간부는 "직장무단 이탈자로 수배했다가 파면처리한 것 외에 특진이나 포상금 등 검거 독려방안을 별도로 쓰지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해 이씨 검거에 대한 경찰내부의 시각을 짐작하게 해주었다.

이 사건의 수사는 서울지검 형사4부에 배당돼 있으나 검찰 역시 이근안씨 검거를 위해 특별한 관심이나 힘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한편 이씨의 부인 조카 등 주변 가족들은 한결같이 "그림자 조차 본 적이 없고 목소리조차 들은 적이 없다"며 이씨의 연락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

이씨의 행방과 관련해 가장 그럴듯한 추정은 그의 얼굴이 세상에 드러나길 두려워하는 세력으로부터 이씨는 자금과 도피처 지원을 받으며 숨어 있을 것

나들었으나 사실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씨는 내년 9월20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어서 남은 10개월 이내에 불잡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다. 이씨에게 적용될 특정범죄가중처벌법(불법체포, 감금 등의 가중처벌)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고, 공소유지가 가능한, 즉 그가 김근태씨를 고문한 마지막날이 85년 9월20일이기 때문이다.

이씨의 검거는 부패한 공권력이 자행한 부도덕성에 대한 단죄의 한 전형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그러나 술한 비호·방조의 의혹 속에 3년의 도피생활이 계속되면서 5공의 부도덕성에 대한 단죄라는 '과거행'을 넘어 6공의 도덕성을 쫓 수 있는 '현재행'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정재권 기자>

## 변협, 이근안경감 현상수배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 등을 고문한 혐의로 수배중인 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53) 경감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현상수배됐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는 21일 이씨에 대해 현상금을 내걸어 공개수배했다고 발표하고 현상금 액수는 오는 2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1천만~5천만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이 수배자에 대해 현상금을 내걸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협은 이씨의 공소시효(7년·92년 9월23일 만료)가 불과 9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수사당국이 성의 있는 수사자세를 보

이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의 각성을 촉구하고 이씨 검거에 대한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씨를 현상수배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85년 9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를 고문하는 등 이른바 시국사범에 대해 극악한 고문을 자행해 온 혐의가 밝혀져 그동안 수배를 받아 왔으나 3년째 행방을 감춘 상태이다.











# 「拷問기술자」李根安경감 辯協서 현상수배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오전 11시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권위헌회의 결의를 받아들여 前민정원의장 金權泰씨를 고문한 혐의로 수배중인 前경기도경 공안부장 李根安(53)에 대한 현상수배문제를 논의했다. 대한변호회는李씨의 공소시효(7년)가 내년 9월 23일 만료되는 데도 그동안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해온

수사기관의 각성을 촉구하 고 李씨검거에 국민들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현 상수배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변호인권 위원회는 지난 16일 李씨를 현상수배하고 검찰에 적구 적인 수사를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李씨는 지난 85년 9월 서울龍山구南營동 차안빌라 대공문실내 파견된 金씨를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 으나 대검중앙수사부에서 수 사에 착수하자(88년 12월 21일) 곧바로 행방을 감춰 3 년이 지나도록 검거되지 않고 있다.

東亞

**김근태씨등 석방촉구 편지**  
**미국의원 18명, 노대통령에**  
 [워싱턴=정연희 특파원] 미국 하원 톰 란토스 의원(민주·상하원 인권위 공동의장)을 비롯한 미 하원의원 18명은 지난 20일 "한국의 대표적인 양심수인 김근태씨를 이번 성탄절에 석방해 줄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 의원들은 이날 편지에서 "한반도에 긴장이 풀리고 있는 이때, 아직도 과거의 흔적으로서 김근태씨를 포함한 정치범들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김근태씨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을 즉시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李根安씨 공소시효 95年 9月 후로 확인  
 85年 前민정원의장 金權泰씨를 전기고문한 혐의로 수배중인 前경기도경 대공문실장 李根安씨(53)· 당시 경안(의) 공소시효는 내년 9월이 아니라 95년 9월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관계자는 23일 "李씨와 공범관계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중인 전치안본부 대공문사단 소속 金秀鎧(58)등 경찰관 4명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李씨의 공소시효는 중단된다"고 말했다.



# 이근안 공소시효 최소 95년

500 애초 알려진 92년 9월 아니다  
1991. 12. 24

## 공범 재판기간 산정 제외따라

### 변협, 인권위 현상수배요청 거절

지난 85년 9월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45)씨를 고문한 혐의로 3년째 수배돼 있는 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53) 전 경감의 공소시효만료일은 애초 알려진 92년 9월23일이 아니라 최소한 95년 9월 이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 전 경감이 역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수현(58·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경감)씨 등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관 4명과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이 전 경감에게 적용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불법체포·감금 등)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공범 김 전 경감 등이 88년 12월 재판에 회부돼 항소심에 계류중이므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공소시효산정이 중단되므로 공소시효만료일은 최소한 95년 9월 이후가 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공범의 공소시효는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 시점부터 재판확

정 때까지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4부(백삼기 부장검사)는 이날 "김수현 경감 등 4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중이므로 이근안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라며 "공소시효만료일을 92년 9월로 보는 언론 등 일부의 주장은 이들의 공범관계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력돼 있는 수사기관의 지명수배조회에는 이 전 경감의 범죄발생일시는 85년 9월5일, 공소시효만료일은 95년 9월12일로 잠정적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김홍수)는 23일 오전 정기상임이사회를 열어 이근안 전 경감을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해 달라는 소속 인권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그러나 현상수배 대신 수사당국의 성의있는 수사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이날 발표했다.

변협은 이 성명서를 통해 "고문 추방이 우리의 과제임을 생각하면 지명수배된 이근안씨가 3년 동안 검거되지 않고 있음은 유감

이며 다시한번 검찰과 경찰에 이씨의 조속한 체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소속 변호사들은 변호사들의 자체모임을 통한 현상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곧 임시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김홍수 회장 등 회장단과 상임이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직접피해자가 아닌 변협이 자체예산으로 현상수배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표결없이 현상수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상수배안건은 상임이사회에 이어 열린 제5차 전체이사회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707

### 拷問없는 사회를 위하여

신경과 비명을 지르는 고문장악기 사  
 람에게 고문자들의 으레 하는 말이  
 있다. '실컷 소리질러 봐라. 우리도  
 을 수 없다. 아무도 들으실 의하지 않  
 다. 아무도 죄를 해 주지 않는다. 아무  
 도 우리를 알아볼 수가 없다.' 이처럼  
 잔인한 고문이 자행되는 것은 고문자  
 들이 자신들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자

신감에 차 있기 때문이다.  
 大韓변호사회의가 새삼 고문기술자  
 李根安전경감의 전거를 위한 수사장  
 구의 심의였던 수사자세를 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를 보면, 변협  
 은 이 성명서를 통해 '고문추방'의 우  
 리의 과제를 생각하면 지명수배권  
 李根安씨가 3년동안 점거되지 않고  
 있을지는 모르며 다시 한번 검찰과 경

찰에李씨의 조속한 체포를 촉구한  
 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는 대  
 한변협이 현안들을 듣고李씨를 공개  
 수배해 달라는 건의를 했으나 수사가  
 관과의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안수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이미 현  
 상급2백만 원의 경侦였으며 수배전단을  
 10만 장이나 뒤돌아 부렸다. 변인의 체  
 포점거는 검찰이 수사기관의 입인대  
 도 이런 단체들이 왜 나서는지 알까.  
 李씨점거를 위한 검찰수사가 미온  
 적이며 심지어 의도적인 수사기피로  
 까지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러  
 한 수사태도 밑바닥에는 이런 생각의  
 깔려 있을 수 있다. 5.16 때 자행된 고  
 문들이 제와서 새삼 문제화할 필요가  
 있겠는가. 李전경감이 고문한 것은 수  
 사관으로서의 직무의 충실하려 했을 뿐  
 사리사욕을 노모하려던 것이 아니지  
 않나. 구시대적 정신은 和解와 寬  
 容의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양쪽  
 음의 報復과 處斷의 수가 허사만은 아  
 니지 않느냐 하는 발상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특별히 알아야  
 한다. 李根安의 관공인 李전경감의 소속과  
 있던 경찰이 한 게 아니다. 고문의  
 피해자와 국민이 한 것이다. 조속의  
 숨어 버린 처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너그러운 용서란 있을 수 없다. 검찰이  
 고문자에 대해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피해자나 국민의 용서  
 해 줄 여지가 없다.  
 李씨가 점거처 단다면 상명하복의 수  
 사기능에 앞으로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 고문이 근절된과  
 화적이고 합리적인 수사태도를 점립  
 하기 위해서도 李씨는 점거되어야 한  
 다. '고문은 의부에서 알 수 없다. 누  
 가 문제삼겠는가' 하는 確信이 깨져야  
 만 고문은 근절된다. 밑에서 지르던  
 단말마의 신음과 비명이란 끝내는  
 세상이 듣고 알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고문, 특히 강철노동은 일반사건이 아  
 닌 정치사회운동이나 언론에 기해지  
 는 이른바 시국사범 반체제인사가  
 해지는 고문의 그 피해가 고문받은  
 사람의 한정되는 게 아니다. 사회전체  
 가 그 피해자라 할 수 있다. 고문의  
 수사관대화하면 그 사회구성원들은  
 다고 믿는 바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  
 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瞻望社會가  
 또다시 도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문의 시달리지 아니하는 사회를 위  
 해서 李전경감의 체포되어 재판에 회  
 부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의의  
 구현이다. 왜 그러해야 되는가를 경  
 찰은 알아야 한다.